

신 · 재생 에너지 입지규제 완화

국토해양부, 국토의 98% 이용 가능 ... 태양광발전 기준도 수정

신 · 재생 에너지 발전시설의 입지선정 및 건설이 한층 자유로워질 전망이다.

국토해양부는 도시계획에 따라 신 · 재생 에너지 발전시설의 건설을 전용 및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허용하는 내용으로 <도시계획 시설의 결정 ·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>을 개정해 3월12일 입법예고했다.

신 · 재생 에너지 발전시설은 태양광, 풍력, 수력, 조력, 지열, 연료전지 등을 이용해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화력 및 원자력 발전소와 동일한 입지규정이 적용돼 공업지역,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만 허용되고 있다.

그러나 6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 · 재생 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현재 국토의 34%에서 98%로 늘어나고 청계천 등 도심지내 하천에도 소수력발전소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.

또 태양광 발전시설은 현재 200kw를 넘으면 도시계획시설로만 설치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발전용량에 관계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<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>도 함께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 · 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9/03/13>